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2. 27. 김동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 12.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4. 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동아의원)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1.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 확대 등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후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의 범위를 3년 이내로 확대할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명

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시 청문 미실시 단서 신설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면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청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아 보이며, 입법례¹⁾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²⁾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법 해석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어 보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